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] <신설 2014.8.8>

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신 청 인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신청 내용	사업개시일		최초반출입 예정일	
	년 월 일		년 월 일	
	보세구역 명칭	저장시설		소재지
		보유형태	사용규모(만㎘)	
		[ ] 자가소유 [ ] 임차		
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사업계획서 1부	수수료
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기안 · 결재	→	통 보

신청인 처리기관: 산업통상자원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